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김 혜 정**

〈요 약〉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년원 임시퇴원자, 보호관찰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던 것으로 본다. 당시 개정소년법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보호처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를 받는 소년범죄자는 지난 2006년 전체 보호처분 대상자의 약 8.6%인 것에서 매년 감소하여 지난 2010년에는 약 5.1%에 불과하여 전체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보니 보호처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소년원송치와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원송치를 받은 소년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어린 나이에 비행과 범죄를 시작하여 소년원에 송치되기 전까지 이미 여러 차례의 비행 및 범죄행위를 반복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형사사법의 개입과 시설수용을 경험함으로써 소년기의 상당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들로 분류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심화된 반사회적 성향이나 습성을 완전히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

---

1) 김지선, "소년원 퇴원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소년보호연구 제10호, 2007, 118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이처럼 범죄성향이 높은 소년원 임시퇴원자들의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과 함께 소년원 임시퇴원자들의 퇴원 후 보호를 위한 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그런데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원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퇴원 후의 보호 역시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소년범죄와 그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현황을 살펴보고,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의 문제점과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검토해봄으로써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I. 소년범죄 및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1. 소년범죄의 현황

2000년대 초 전체 소년범죄가 감소하는 추세[3)를 보이던 것이,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4)를 보이고 있다. 또 소년인구 10만 명당 소년범죄자 수도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감소하

---

2) 이성칠,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23, 2002, 29면.

3)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2012, 108면.

4) 2009년 이후 소년범의 감소추세는 소년법상 소년의 상한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2006년-2010년 전체 소년범죄자 동향

연도	총범죄	전체소년 범죄	전년대비 증감률	총범죄 대비 소년범 비율	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2006	1,829,211	69,211	2.6	3.7	971.1
2007	1,965,977	88,104	27.3	4.5	1,141.7
2008	2,189,452	134,992	53.2	5.5	1,447.1
2009	2,168,185	113,022	−16.3	4.5	1,318.0
2010	1,917,300	89,776	−20.6	4.6	1,143.7

자료 :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2012, 44면, 108면, 109면 참조.

반면, 최근 5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화 정도가 67%에 이른다는 연구결과[5]를 고려할 때,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5) 김준호/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5-04, 1995, 12면 이하 참조.

〈표 2〉 2005년-2009년 소년범 재범률 현황

전과 / 연도	계 (%)	전과 없음 (%)	전과횟수				미상 (%)
			소계 (%)	1범 (%)	2범 (%)	3범 이상 (%)	
2005	67,478 (100.0)	42,017 (62.3)	20,915 (30.9)	9,307 (13.8)	4,601 (6.8)	7,007 (10.4)	4,546 (6.7)
2006	69,211 (100.0)	44,236 (63.9)	19,989 (28.9)	9,193 (13.3)	4,124 (6.0)	6,672 (9.6)	4,986 (7.2)
2007	88,104 (100.0)	55,543 (63.0)	25,547 (29.0)	11,540 (13.1)	5,332 (6.0)	8,675 (9.9)	7,014 (8.0)
2008	134,992 (100.0)	79,285 (58.7)	35,414 (26.2)	15,476 (11.5)	7,553 (5.6)	12,385 (9.2)	20,293 (15.0)
2009	113,022 (100.0)	65,990 (58.4)	36,583 (32.4)	15,103 (13.4)	7,637 (6.7)	13,843 (12.2)	10,449 (9.3)

자료 :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617면.

2.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소년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장·단기의 소년원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보호처분 중 소년원송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는 약 8.6%, 2007년에는 약 6.5%, 2008년에는 약 5.4%, 2009년에는 약 5.3%, 2010년에는 약 5.1%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2006년-2010년 보호처분 현황[6)]

연도	계	1호	1·2호	1·3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2006	20,241	4,596	7,003	6,416	10	10	462	10	883	851
2007	26,874	6,536	10,391	7,639	34	9	478	27	957	803

6) 개정전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2007년 12월 21일 개정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연도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병과 처분 기타
2008	30,222	6,214	130	181	–	10	410	–	6	**762**	**857**	360
2009	35,819	5,883	71	268	23	3	128	100	22	**919**	**992**	151
2010	32,416	4,527	37	116	34	13	73	81	11	**861**	**806**	68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972	–	3,535	874	765	1,576	227	1,960	1,838	6,259	2,599	137	142	408
3,388	572	4,891	1,186	1,905	1,581	1,148	2,183	1,731	4,780	1,256	192	739	1,708
4,251	615	4,473	1,309	1,777	1,288	1,399	2,182	1,482	3,593	880	104	747	1,689

자료 :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622면 이하 및 대법원, 사법연감, 2010 참조.

이처럼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활한 사회재복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소년원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기존의 일반학교 교육체제만으로는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체제를 실용영어와 컴퓨터 교육중심의 “특성화 교육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소년원의 특성화 교육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보호소년수용지침의 개정 등 일련의 소년원 운영방식 및 정책의 변화는 임시퇴원자에 대한 사회복귀 또는 재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임시퇴원자에 대한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III. 소년원의 임시퇴원제도에 관한 검토

1. 임시퇴원제도의 본질

교정의 목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통한 범죄로부터 사회의 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의 목표도 역시 소년범죄자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활과 재통합, 통제와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시퇴원은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이념에 기초한 제도로써, 교정시설외의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임시퇴원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내지 재활을 돕는 처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임시퇴원은 수용시설의 특성상 퇴원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회복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처우의 여러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교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다.[7]

이러한 소년원의 임시퇴원자에게, 1989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도입·실시되면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 이하 '보호소년처우법'이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시설내처우에서 자유상태의 생활로 재적응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와 원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퇴원과 임시퇴원의 요건

이러한 임시퇴원제도는 (조기)퇴원제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

7) 이성칠, 앞의 보고서, 36면 이하.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소년법의 개정 당시 종래 소년원법이 보호소년처우법으로 개칭과 함께 개정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보호소년처우법 제44조에 임시퇴원(종래 가퇴원)과 관련하여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시퇴원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시퇴원과 관련하여 구 소년원법(제44조)과 개정된 보호소년처우법(제44조) 모두에서 임시퇴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변화가 없다.[8)]

다만 (조기)퇴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년법 제43조 제2항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고 하여 그 결정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던 것에서, 개정된 보호소년처우법 제43조 제3항에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조기)퇴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9)] 이러한 변화는 (조기)퇴원 내지 임시퇴원의 경우 궁극적으로 퇴원 후 사회재복귀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

8) 보호관찰법 제22조 제1항에서도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역시 임시퇴원의 판단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9) 소년원에서의 퇴원과 관련하여 ① 소년원 수용연령이 초과한 경우(보호소년처우법 제43조 제1항), ② 소년원 수용 상한기간의 도달에 의한 즉시퇴원(동조 제2항), ③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아무런 조건 없이 퇴원시키는 조기퇴원(동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그리고 ④ 교정성적이 양호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관찰 부과하면서 조기 퇴원시키는 임시퇴원(시행규칙 제75조)으로 나뉘어 있다.

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임시퇴원에 비하여 (조기)퇴원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조기)퇴원과 임시퇴원을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표 4〉 보호소년처우법상 퇴원 및 임시(가)퇴원의 요건

	개정 전	개정 이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구 소년원법)	제43조 (퇴원)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퇴원) ③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는 (조기)퇴원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년원법시행규칙에서는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 (조기)퇴원과 임시퇴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 "소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허가 또는 가퇴원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여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처우심사의 결

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여부의 판정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보호소년처우법시행규칙에는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개정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하여, 결국 보호소년처우지침[10]이라는 내부지침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즉 보호소년처우지침 제21조에 임시(가)퇴원과 (조기)퇴원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단서 조항에 (조기)퇴원을 위한 별도의 4가지 기준을 추가하면서, 임시퇴원의 경우에는 일반기준만 충족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이 가능하지만, (조기)퇴원을 위해서는 일반기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심사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 과거에 비해 그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 보호소년처우지침 상 퇴원 및 임시(가)퇴원의 요건

	개정 전	개정 이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소년원법 시행규칙)	제75조 **(퇴원허가·가퇴원심사 신청기준)** ①소년원장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퇴원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교정성적이 "수"에 해당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처우심사결과	제75조**(퇴원·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소년원장이 법 제43조의 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

10) 2009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호소년처우지침 제21조에 퇴원·임시퇴원 신청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일반기준과 특히 (조기)퇴원을 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나, 동지침은 내부문건인 관계로 외부에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본 논문에서 언급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되어 일반과정에 분류된 자로서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전 수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24월을 초과하는 보호소년 3. 단기과정에 분류된 자로서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수용일수가 5월을 초과하는 보호소년 ②소년원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교정성적이 "수"에 해당되고 환경의 조정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 2. 교정성적이 "우"에 해당하는 보호소년 3. 교정성적이 "우"미만에 해당되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또는 창업보육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소년원 퇴원 및 임시(가)퇴원의 변화추이

소년원을 퇴원하는 요건으로 보호소년처우법 제43조에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소년원장은「소년법」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

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원 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대비 2008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종래 매년 출원자의 10-30% 정도를 조기퇴원[11] 시킴으로써 1997년 이후 퇴원의 수치가 높아졌으나, 2007년 보호소년처우법 등의 개정 이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항에 해당하는 (조기)퇴원의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퇴원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548 (100.0)	1,591 (100.0)	1,780 (100.0)	2,131 (100.0)	2,820 (100.0)
퇴원	1,380 (89.1)	1,164 (73.2)	871 (48.9)	1,122 (52.7)	1,821 (64.6)
임시퇴원	112 (7.2)	377 (23.7)	857 (48.1)	950 (44.6)	934 (33.1)
처분변경 등	5(0.3)	9(0.6)	10(0.6)	56(2.6)	54(1.9)
기타	51(3.3)	41(2.6)	42(2.4)	3(0.1)	11(0.4)

* 처분변경 등 :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등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454면.

11) 이성칠, 앞의 보고서, 41면 참조.

이처럼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임시퇴원을 신청할 것인지 또는 (조기)퇴원을 신청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소년원 자체 처우심사를 거쳐 조기퇴원과 임시퇴원을 구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보호소년처우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이러한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 그 판단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조기퇴원의 판단기준이 내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그 기준이 종전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현재 조기퇴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상당수 소년원 수용소년이 임시퇴원 대상자로 신청이 되고 (조기)퇴원과 달리 임시퇴원의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 받게 되어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IV.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1.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보호관찰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시 퇴원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동법 제30조 제4호에 의거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을 살펴볼 때, 아래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호 및 5호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2005년 전체의 약 2.7%인 것에서 2009년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여 4호 및 5호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의 수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상당히 적은 수이지만, 최근 그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소년법상 보호관찰의 처분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계	30,499	28,089	30,400	33,714	37,119	10.1
단기보호관찰	10,303	10,590	13,097	16,615	18,605	12.0
장기보호관찰	19,376	17,055	16,732	15,849	16,874	6.5
임시퇴원	820	444	571	1,250	1,640	31.2

자료 :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21면.

2. 임시퇴원과 보호관찰의 문제

이러한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한 조사결과[12]에 따르면,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지도가 다른 보호처분대상자, 즉 단기 및 장기보호관찰대상자 혹은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더 나아가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상당수의 보호관찰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어려운 이유로는 임시퇴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높은 재범률, 그리고 소년원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아래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12) 이성칠, 앞의 보고서, 82면 이하 참조.

같이, 2005년-2009년 동안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이 성인의 경우 평균 약 4.9%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년법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평균 약 10%로 성인의 약 2배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시퇴원자의 재범률은 평균 약 15.9%로 다른 대상자의 1.5배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중 임시퇴원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이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들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2005년-2009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현황

연도	구분	성인	소년				
		계	계	소년법			
				소계	보호처분		임시퇴원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2005	실시인원	46,831	31,569	25,851	8,351	16,680	820
	재범자	2,937	2,954	2,628	422	2,062	144
	재범률	6.3	9.4	10.2	5.1	12.4	17.6
2006	실시인원	53,058	34,189	28,089	10,590	17,055	444
	재범자	2,306	2,755	2,383	483	1,833	67
	재범률	4.3	8.1	8.5	4.6	10.7	15.1
2007	실시인원	52,316	36,235	30,400	13,097	16,732	571
	재범자	2,392	3,311	2,919	776	2,049	94
	재범률	4.6	9.1	9.6	5.9	12.2	16.5
2008	실시인원	53,373	39,901	33,714	16,615	15,849	1,250
	재범자	2,429	3,598	3,166	920	2,057	189
	재범률	4.6	9.0	9.4	5.5	13.0	15.1
2009	실시인원	54,706	44,255	37,119	18,605	16,874	1,640
	재범자	2,496	5,014	4,487	2,061	2,182	244
	재범률	4.6	11.3	12.1	11.1	12.9	14.9

자료 : 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41면 이하.

무엇보다도 임시퇴원자들이 임시퇴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컨대 단기 소년원송치 대상자는 보통 4-5개월 수용된 때 임시퇴원 대상자로 신청되는데, 이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퇴원자 중에 임시퇴원이 오히려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임시퇴원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보호관찰에 대한 지도곤란으로 연결된다고 한다.[13)]

사실 소년범이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법 제30조 제3호 및 소년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법 제30조 제4호에 의하여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만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예컨대 제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을 받은 소년이 만기 퇴원을 1개월 앞두고 임시퇴원을 허가 받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시퇴원과 함께 잔여기간의 약 6배가 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시퇴원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다. 임시퇴원은 보호소년처우법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원활한 사회재복귀를 위하여 은전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기퇴원을 1개월 남겨두고 있는 대상소년에게 임시퇴원과 함께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상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은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13) 이성칠, 앞의 보고서, 51면 이하 참조.

설사, 소년원이라는 시설내에 구금되어 있는 것보다는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임시퇴원되어 사회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의문은 결국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견해, 자유형집행의 변형이라는 견해, 제3의 독립제재라는 견해[14] 등으로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보호관찰이 미국의 Probation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임시퇴원에 대한 6월 이상의 보호관찰 부과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5]

또한 임시퇴원자의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대부분 외출제한명령이 부가되는 것으로 안다. 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범 보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년법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2009년 소년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총 9,793건 중 소년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경우가 9,685건[16]으로 약 9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출제한명령은 일상활동이론이나 상황적 구조화이론 등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 논의하는 범죄기회의 억제를 통한 재범예방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17],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그룹과 일

---

14)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0판, 2008, 357면 이하 참조.
15)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을 제3의 독립제재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단기 소년원 송치에 대하여 임시퇴원을 시키면서 6월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1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2011, 556면
17) 윤옥경, “한국 소년범죄의 추세와 소년보호관찰의 정책방향”, 소년보호연구 제17호, 2011, 49면 참조.

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그룹의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내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재범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18]는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외출제한명령의 부가와 관련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9〉 2005년-2009년 외출제한명령 개시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857	5,337	6,229	8,293	9,930
소년	2,763	5,109	6,013	7,984	9,793
성인	94	228	216	309	137

자료 : 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109면.

V.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처분을 받는 소년범죄자는 약 5% 정도에 불과하여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집단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임시퇴원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 비율이 최근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들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비율이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19]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18)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25면 참조.

19) 특히 임시퇴원자의 높은 재범률에 대하여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임시)퇴원 후 열악한 가정환경 등 보호상태가 나쁜 것", "보호관찰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소년 자신의 상습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조기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시퇴원제도의 운영이 본래 소년법 및 보호관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퇴원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과 부합한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보호소년처우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소년원에서 (조기)퇴원 내지 임시퇴원을 신청하기 위한 처우심사 단계에서부터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보호관찰을 통해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 소년원송치의 경우에 (조기)퇴원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보호소년처우지침 제21조에 있는 일반적인 요건과 함께 부가적으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20]

물론 임시퇴원의 경우, 퇴원과 함께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반면, 조기퇴원의 경우 아무런 부담이 없고, 또 조기퇴원의 경우, 양호한 대상자에게 은전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한 생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기)원의 신청요건이 임시퇴원의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요구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적 범죄성이 개선되지 않음"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이성칠, 앞의 보고서, 97면 이하 참조). 이러한 내용은 임시퇴원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2009년 중반까지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조기퇴원 심사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2009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자료 참조).

그러나 조기퇴원이 임시퇴원보다 유리한 처우라는 측면에서 그 요건의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상 소년의 노력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보호소년처우법은 소년사법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법률로 개정 소년법이 취하고 있는 “처벌 위주에서 교화와 선도 중심으로”라는 목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소년범에 대한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소년형사사법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인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21]

또 구 소년원법시행규칙에서는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 보호소년처우시행규칙에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지침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최소한 시행규칙에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임시퇴원의 신청과 그에 따른 보호관찰의 재검토

단기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4-5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임시퇴원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임시퇴원되는 소년은 보호관찰법 제30조 제4호에 따라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받는다. 문제는 임시퇴원자에게 남은 기간의 최소 3배를 초과하는 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대상소년을 임시퇴원시키면서 6개월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임시퇴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고, 이는 가석방과 비교하여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

21) 김혜정, “현행 소년 보호처분의 문제점”, 영남법학 제27호, 2008, 190면.

따라서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임시퇴원의 경우도 수용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임시퇴원의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임시퇴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 부과와 함께 부가되는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될 경우, 다시 남은 수용기간 만큼 재수용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따라서 준수사항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와 함께 임시퇴원에 대한 보호관찰은 – 만약 가석방의 경우처럼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 적어도 남은 수용기간의 최대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임시퇴원과 함께 부과되는 보호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보다 성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처럼 임시퇴원과 함께 실시되는 보호관찰에 대한 인식변화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보호관찰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보호관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협력체계의 활성화

기본적으로 임시퇴원자에 대한 소년원의 교육과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은 상당부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일은 비단 보호관찰만의 업무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소년의 사회복귀는 시설에 수용되는 그 순간부터 수용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재진입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속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수용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가족, 일탈적인 또래집단,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위험요소 및 복합적인 문

제 상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원호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와 관련된 공적 기관들이 자신의 활동범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내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연계체계까지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22)]

그런 점에서 소년원에서 임시퇴원되는 소년들에 대하여 사회복귀 교육을 10일 정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나마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생각된다.[23)] 사실 (조기)퇴원 내지 임시퇴원이 결정되면 대상자가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먼저 사후보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사후보호가 곧바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들이 소년원을 방문하여 대상 소년을 면접하고 소년원의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교사와의 협의 하에 사회복귀 후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기간이 10일 정도인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퇴원 신청 시기를 수용기간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하면서, 현재 10일 정도로 되어 있는 소년원의 사회복귀교육기간을 최소 1개월 정도로 늘려 임시퇴원자에 대한 사전 보호관찰 교육도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사이에 긴밀한 업무협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집행의 개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소년의 재범 유발요인[24)]과 관련하여 성별,

---

22) 김지선, 앞의 논문, 147면 이하 참조.
23) 이성칠, 앞의 보고서, 197면 참조.

보호관찰 접촉횟수, 가출횟수, 비행교우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접촉이 증가 할수록 비행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임시)퇴원자의 경우 집중보호관찰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보다 재범위험성 높은 만큼 재범률도 높게 도출되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들에게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재범가능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성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보호관찰의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26]

일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비교할 때 임시퇴원자는 범죄성향이나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의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범 유발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적절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보호관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집중감독 내지 중간제재가 필요 없는 저위험 범죄자에게 불필요한 감시와 지도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2차 낙인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외출제한명령과 같은 부가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인지를 먼저 분류심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7]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년원에서 (조기)퇴원 및 임시퇴원신청을 결정하기 위한 처우심사 과정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을 보다 구체

24)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윤오,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 79면 이하.

25) 김지선, 앞의 논문, 150면 참조.

26) 그런 점에서 임시퇴원자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면서 일반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27) 같은 견해로 조윤오, 앞의 논문(2009), 27면.

화·전문화함으로써 개별 처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보호관찰의 기간, 외출제한명령의 부가여부, 기타 준수사항의 부가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28) 이러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보호관찰의 업무 부담이 중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시퇴원자들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29)

5. 임시퇴원자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범죄소년을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면 재비행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즉 감시감독만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호감독수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처우프로그램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이나 인성프로그램의 실시 등 매우 빈약하고 단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0) 따라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31)

---

28) 천진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8호, 2010, 441면 이하 참조.

29) 미국에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성공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담 보호관찰직원뿐만 아니라 보조직원까지 두어 사후보호를 실시하였고,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임시퇴원자 수도 18명 미만으로 조정하여 집중적인 보호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김지선, 앞의 논문, 157면 이하 참조).

30) 김지선, 앞의 논문, 158면.

31) 이는 앞에서 임시퇴원자의 재범 유발요인으로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의 부족”이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임시퇴원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대상자의 욕구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32]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소년 개별욕구에 적합한 교육, 취업, 건강, 사회적응 기법 등을 사후지도 통합 서비스로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임시퇴원소년의 실질적인 행동수정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욕구 중심 서비스 제공과 사후지도 및 상담처우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적인 교정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3]

6. 퇴원·임시퇴원 이후의 생활보장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가족, 일탈적인 또래집단, 학교부적응 등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갖고 있다. 사실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통하여 성행이 개선되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역기능적인 가족과 일탈적인 또래집단, 그리고 여전히 지배적인 물질만능적 사회문화와 접할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

32) 소년원생들은 인내심훈련, 자신감향상훈련, 충동자제훈련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향후 정상적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진로지도, 취업알선 및 성격변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고 한다(김지선, 앞의 논문, 159면 이하).

33) 특히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원혜욱, “소년보호관찰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 제9권 제2호, 2009, 210면 이하 참조).

따라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처우과정에서 매 단계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재범예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사후보호 단계가 실패하면 그 이전의 모든 단계가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재범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이전의 모든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없으므로 사회로 되돌아오게 된 소년범죄자들의 사회복귀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34)]

따라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소년원 수용자들의 상당수가 소년원을 출원하여 돌아가는 곳이 여전히 비행 내지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임시퇴원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퇴원자 인수시설의 자격 미달로 인하여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35)] 따라서 보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소년원에서 직업을 알선하여 임시 퇴원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따라서 임시퇴원자에 대한 직업알선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인 취업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34) 김지선, 앞의 논문, 119면 이하 참조. 이는 소년원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퇴원 이후 학업이나 진로문제가 걱정”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남미애,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아동권리연구 제9권 제2호, 2005, 167면 참조.
35) 이성칠, 앞의 보고서, 186면 참조.
36) 이성칠, 앞의 보고서, 198면 이하.

V. 맺음말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재복귀할수 있도록 원호하는 문제는 비단 보호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준호/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5-04, 1995.

김지선, “소년원 퇴원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소년보호연구 제10호, 2007.

김혜정, “현행 소년 보호처분의 문제점”, 영남법학 제27호, 2008.

남미애,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아동권리연구 제9권 제2호, 2005.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0판, 200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창간호, 2011.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2012.

원혜욱, “소년보호관찰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 제9권 제2호, 2009.

윤옥경, “한국 소년범죄의 추세와 소년보호관찰의 정책방향”, 소년보호연구 제17호, 2011.

이성칠,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23, 2002

조윤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조윤오,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

천진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8호, 2010.

ABSTRACT

Die Bewährungshilfe fü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 Jugendlichen*

Hye-Jeong Kim*

Die Jugendkriminaltät darf nicht zur Lebenszäsur werden, sondern muß als ein Übergangsstadium von Menschen behandelt werden. Damit basiert das Jugendgesetz auf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der jungen Straftäter. Auf dieser Richting wurden das Jugendgesetz und das Gesetz der Behandlung für Jugendliche im Dezember 2007 weit reformiert.

Die jungen Straftäter werden nach dem Jugendgesetz Schutzmaßnahmen verurteilt, wenn von ihnen eine Möglichkeit zur Verbesserung, Erziehung und resozialisierung erwartert werden kann. Aber es gibt immer noch Probleme in der reformierten Schutzmaßnahmen.

Besonders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muß der Jugendliche eine Bewährungshilfe mehr als 6 monaten unten 2 Jahre auferlegt werden. Da liegt ein Prob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o ist es notwendig, dass die Frist der Bewährungshilfe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überlegt wird.

Und für die Resozializierung de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n Jungenlichen muß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die Bewährung und die Jugendanstalt notwendig si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1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Keywords

Jugendgesetz, Schtzprinzip, Bewährungshilfe, vorläfige Aussetzung, Schutzmaßnahmen

투고일 : 2012. 5. 28.　　심사일 2012. 6. 16.　게재확정일 : 2012. 6. 20.